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6.08.07.(금)]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10:00~14:00)도 가능합니다.
- ※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2.공급일정' 및 '3.유의사항'의 각 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 급 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블록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5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주체 : (주)동일코퍼레이션
- 시 공 사 : (주)동일토건
- 공급대상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059.9390A	59A	59.9390㎡	21.0676㎡	81.0066㎡	46.8635㎡	127.8701㎡	175	18
059.8977B	59B	59.8977㎡	20.7410㎡	80.6387㎡	46.8312㎡	127.4699㎡	112	12
059.5027C	59C	59.5027㎡	21.1392㎡	80.6419㎡	46.5225㎡	127.1644㎡	38	4
071.2889A	71A	71.2889㎡	24.4538㎡	95.7427㎡	55.7375㎡	151.4802㎡	38	4
071.8211B	71B	71.8211㎡	24.0670㎡	95.8881㎡	56.1537㎡	152.0418㎡	78	8
084.7577	84	84.7577㎡	28.1434㎡	112.9011㎡	66.2682㎡	179.1693㎡	148	15
계							589	61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500% 적용)

구분	59A	59B	59C	71A	71B	84	합계
국가유공자	4(20)	3(15)	-	-	2(10)	3(15)	12(60)
장기복무제대군인	3(15)	2(10)	1(5)	1(5)	2(10)	3(15)	12(6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2(10)	1(5)	1(5)	2(10)	3(15)	12(60)
중소기업 근로자	4(20)	3(15)	1(5)	1(5)	1(5)	3(15)	13(65)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경기도	2(10)	-	1(5)	1(5)	1(5)	6(30)
	서울특별시	1(5)	1(5)	-	-	1(5)	3(15)
	인천광역시	1(5)	1(5)	-	-	1(5)	3(15)
합계	18(90)	12(60)	4(20)	4(20)	8(40)	15(75)	61(305)

- 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6.08.07.(금)	• 당사 홈페이지 (https://용인동일하이빌파크밸리.com)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8.18.(화) ~ 19.(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	2026.08.27.(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제외)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 참 고 자 료

사업 안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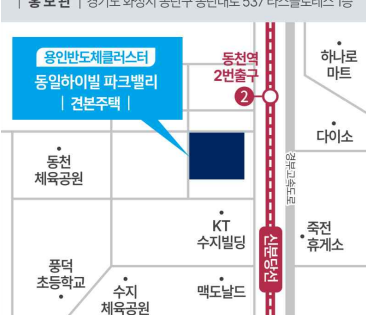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홍보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1층



- 홍 보 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1층
-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
- 총 1,250세대 중 1단지 589세대(59㎡, 71㎡, 84㎡)
- 홈페이지 : <https://용인동일하이빌파크밸리.com>